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2월 28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2025년 2월 28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